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44 발의연월일 : 2025. 4. 25.

발 의 자:이강일·양부남·장철민

채현일 · 김병기 · 김남근

김주영 • 허성무 • 한정애

이성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」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4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